

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방법(제9조제5항 관련)

1.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

가. 사업자가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: 해당 사업자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상태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추정된 배출량을 기준이내 배출량으로 한다.

- 1) 부과기간에 배출시설별 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 농도로 배출했을 것
- 2)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최대시설용량으로 가동했을 것
- 3) 1일 24시간 조업했을 것

나. 자료심사 및 현지조사 결과,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(사용연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)이 실제와 다른 경우: 자료심사와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산정한 배출량을 기준이내 배출량으로 한다.

다.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가 명백히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: 가목에 따라 추정한 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 배출량으로 한다.

2.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

가. 사업자가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: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 당시의 배출농도와 일일폐수유량으로 배출한 것으로 보고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 배출량으로 한다.

- 1)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 당시의 배출농도와 일일폐수유량을 곱하여 일일검사 배출량을 산정한다.
- 2) 1)에 따라 산정한 일일검사배출량을 합산한 값을 검사횟수로 나누어 일일평균 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.
- 3) 2)에 따라 산정한 일일평균 검사배출량에서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의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에 조업일수를 곱하여 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.

나.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이 가목에 따른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 이상 적은 경우: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 배출량으로 한다.